

在留資格の手続き

日本に在留するときには、入国管理局で手続きが必要です。外国人が、現在行っている活動をやめて別の在留資格に属する活動をする場合には、在留資格の変更の許可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たとえば留学生が日本で就職する場合)。また、日本に在留する外国人が在留期間満了後も引き続き同じ在留活動を継続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在留期間の更新許可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たとえば留学生が学業を継続する場合)。再入国許可などの申請は、住所を管轄する入国管理局(出張所)で、原則として申請人本人が行います。岡山県在住の外国人の在留資格や出入国手続きに関する詳しいことは、下記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広島出入国在留管理局

岡山出張所

岡山市北区下石井1-4-1

岡山第2合同庁舎11階

TEL : 086-234-3531

受付時間 : 月曜日～金曜日

9 : 00～12 : 00、13 : 00～16 : 00

(祝日、12/29～1/3を除く)

체류자격의 수속

일본에 체류할 때는 입국관리국에서 수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하는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직을 하는 경우)

또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만료 후에도 같은 체류활동을 계속 할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갱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등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입국관리국(출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오카야마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출입국 수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히로시마 출입국체류관리국

오카야마출장소

오카야마시 기타쿠 시모이시이 1-4-1

오카야마 제2 합동청사 11층

TEL : 086-234-3531

접수시간 : 월요일～금요일

9 : 00～12 : 00、13 : 00～16 : 00

(공휴일, 12/29～1/3 은 제외)

在留카드

在留カードは中長期在留者に対し、上陸許可や在留資格の変更許可、在留期間の更新許可などの在留に係る許可を伴って交付されます。在留カードは、日本での身分を証明するものとして、16歳以上の人は、いつでも持っている義務があります。

出入国在留管理庁

<http://www.immi-moi.go.jp/>

法務省 入国管理局

http://www.immi-moi.go.jp/newimmiact_1/

(1) 在留期間의 更新

在留期間を更新したい場合は、在留期間が満了する前に入国管理局(出張所)で更新の申請をします。6か月以上の在留期間を有する場合は、在留期間の満了するおおむね3か月前から受け付けています。手数料4,000円。

【必要書類】

-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 活動内容ごとに法務省令で定める資料
- パスポート
- 在留カード
- その他入国管理局ホームページを参照

체류카드

체류카드는 증장기 체류자에 대해, 상륙허가나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체류기간의 갱신 허가 등, 체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됩니다.

체류카드는 일본에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16세 이상의 분은 항상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입국체류관리청



법무성 입국관리국



(1) 체류기간 갱신

체류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관리국(출장소)에서 갱신의 신청을 합니다.

6개월 이상의 체류기간이 있을 경우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부터 접수가능합니다. 수수료: 4,000 엔

【필요한 서류】

-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 활동내용별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료
- 여권
- 체류카드
- 그 외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를 참조

(2) 在留資格の変更

現在取得している在留資格の活動を中止して、別の在留資格にあてはま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場合は、在留資格変更手続きが必要です。手数料4,000円。

【必要書類】

-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 ・活動内容ごとに法務省令で定める資料
- ・パスポート
- ・在留カード
- ・その他入国管理局ホームページを参照

(3) 出生による在留資格の取得

日本国内で出生したとき、出生後30日以内(但し、60日以内に出国する場合は必要ありません)に入国管理局(出張所)で在留資格の取得許可の申請をします。

【必要書類】

- ・在留資格取得許可申請書
- ・両親の在留カード
- ・両親の旅券(パスポート)
- ・出生証明書、母子健康手帳など
- ・その他入国管理局ホームページを参照

(2) 체류자격 변경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의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는 체류자격 변경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 4,000 엔

【필요한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
- ・활동 내용별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료
- ・여권
- ・체류카드
- ・그 외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를 참조

(3) 출생에 의한 체류자격 취득

일본에서 출생하여 출생일부터 30 일 이내(단, 60 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는 필요없습니다)에 입국관리국(출장소)에서 체류 자격의 취득 허가의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체류자격 취득허가신청서
- ・부모의 체류 카드
- ・부모의 여권
- ・출생 증명서, 모자 건강 수첩 등
- ・그 외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를 참조

(4) 永住許可

日本に永住を希望する人は、永住許可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入国管理局(出張所)で永住許可を申請します。

手数料は許可されるとき、8,000円が必要ですが、詳しくは、入国管理局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必要書類】

- ・永住許可申請書
- ・パスポート
- ・在留カード
- ・身分を証する文書など
- ・その他入国管理局ホームページを参照

(4) 영주허가

일본에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영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출장소)에서 영주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8,000 엔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국관리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

- ・영주허가신청서
- ・여권
- ・체류카드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 ・그 외 입국관리국의 홈페이지를 참조

(5) 資格外活動の許可申請

現在取得している在留資格以外の活動で収入・報酬がある活動をする場合は、原則として就労活動を行うことはできませんが、入国管理局から「資格外活動許可」を受ければ、次の一定の制限範囲内でアルバイト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留学生の資格外活動

資格外活動時間の制限

- 週 28時間 (1日8時間) 以内

資格外活動場所の制限 (禁止事項)

風俗営業又は風俗関連営業が営まれている営業所 (例えば、バー、スナック、パチンコ屋など) でのアルバイトは、できません。

資格外活動許可申請の手続き

【必要書類】

- 資格外活動許可申請書

- 在留カード

- パスポート

詳しくは、大学・学校の留学生担当課又は下記に問い合わせください。

広島出入国在留管理局

岡山出張所

TEL : 086-234-3531

(5) 자격외활동의 허가신청

현재 취득하고 있는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으로 수입·보수가 있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입국관리국에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다음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자격외활동

자격외활동 시간의 제한

- 주 28 시간 (1일 8 시간 이내)

자격외활동 장소의 제한

유흥업소 또는 유흥업과 관련된 영업소 (예를 들면, 바, 스낵, 파칭코 등)에서의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자격외활동 허가신청의 수속

【필요한 서류】

- 자격외활동 허가신청서

- 체류카드

- 여권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및 학교의 유학생 담당과 또는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히로시마 출입국체류관리국

오카야마출장소

TEL:086-234-3531

(6) 再入国許可申請

再入国許可가なく日本の国外に出ると、日本に戻る時に改めて「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をし、「入国査証 (ビザ)」をもら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日本への再入国が1年以上先になるときは、入国管理局で再入国許可を受けてから出国します。手数料3,000円 (1回限り)、もしくは、6,000円 (数次許可) を支払ひ、再入国許可の証印シールを旅券に貼ってもらいます。再入国許可の有効期限は、現に有する在留期間の範囲内で、5年間を最長として決定されます。再入国許可の有効期限内に再入国しないと在留資格が失われることとなりますので、注意してください。

みなし再入国許可

有効なパスポートと在留カードを持っている人が、日本を出国して1年以内 (在留期限が出国の日から1年以内にくる場合は在留期限まで) に再入国する場合は、再入国許可は不要です。出国後、みなし再入国許可の有効期限内に再入国しないと在留資格が失われることとなりますので、注意してください。出国する際に、必ず、旅券および在留カードを提示してください。

(6) 재입국허가신청

재입국허가없이 일본의 국외로 출국하면 일본으로 재입국할 때에는 다시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여 「입국사증(비자)」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으로의 재입국이 1년 이상 나중에 될 경우는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고나서 출국합니다. 수수료 3000 엔(1회 한정) 혹은 6000 엔(복수허가)을 지불하면 재입국허가의 증인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줍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기간의 범위내로 5년간이 최장으로 결정됩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을 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미나시재입국허가

유효한 여권과 체류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본을 출국한 뒤 1년 이내 (체류기한이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오는 경우는 체류 기한까지) 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출국 후, 미나시재입국허가의

유효 기한 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하십시오.

출국 할 때는 반드시 여권과 체류카드를 제시하십시오.

(7) 住居地以外の変更登録申請

住居地以外の変更があるときは、入国管理局に届出て変更してもらいます。氏名、生年月日、性別、国籍・地域の変更は 14 日以内に入国管理局の窓口で行います。

(8) 紛失と再交付

在留カードを紛失したり、盗難にあったり、汚してしまった場合には、警察に紛失届等を提出し、受理証明書を得、その事実を知った日(海外で知ったときは再入国の日)から 14 日以内に入国管理局で再交付の申請をし、新しい在留カードをもらいます。その他、在留カードの写真を変更したい場合など、在留カードの交換を希望する場合にも再交付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9) 在留カードの返納

死亡したときは、死亡の日から 14 日以内に本人の親族または同居人が在留カードを最寄りの入国管理局に返納します。日本を出国し、再入国しないときは、出国の際に空港・港の入国審査官に渡してください。

(7) 주거지 외의 변경등록신청

주거지 외에 변경이 있으면 입국관리국에 제출하여 변경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의 변경은 14 일 이내에 입국관리국 접수처에서 합니다.

(8) 분실과 재교부

체류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혹은 손상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증명서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해외에서 알았을 경우는 재입국날)부터 14 일 내에 입국관리국에서 재교부를 신청해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 외에 체류카드사진을 변경하고 싶거나 체류카드의 교환을 희망할 경우에도 재교부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체류카드의 반납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본인의 친족 혹은 동거자가 체류카드를 가장 가까운 입국관리국에 반납합니다. 일본을 출국한 뒤,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는 출국 시에 공항·항구의 입국심사관에게 반납하십시오.